

- 기”→ “대도시(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유치지역 및 도시계획법의 적용을 받는 공업지역을 제외한다)안에서의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에 따른 부동산등기”로(관련조문 : 시행령 제102조 제1항)
- ⑧ 법제160조제2항 : 개정전 법제161조제2항에서 “면허의 종류와 종별구분 및 과세면제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”→ “면허의 종별은 사업의 종류 및 그 규모 등을 참작하여 제1종 내지 제5종으로 구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”로(관련조문 : 시행령 제124조)
- ⑨ 법제163제2항제6호 : “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허”→ “면허의 단순한 표시 변경 등 면허세의 과세가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면허”로(관련조문 : 시행령 제126조의2)
- ⑩ 법제180조제2호 단서 : “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 및 건물과 건축물의 특수한 부대설비를 제외한다”→ “주택에 부속 또는 부착된 시설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.”로(관련조문 : 시행령 제131조)
- ⑪ 법제184조제9호 : “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”→ “행정기관으로부터 철거명령을 받은 건축물 등 재산세를 부과함이 부적절한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”로(관련조문 : 시행령 제136조의3)
- ⑫ 법제188조제1항제2호(3) :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시내에서”→ “특별시·광역시(군지역을 제외한다)·시(읍·면지역을 제외한다)지역안에서”로(관련조문 : 시행령 제142조의2)
- ⑬ 법제188조제2항 :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도시내” → “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(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산업단지 및 유치지역과 도시계획법의 적용을 받는 공업지역을 제외한다)안”으로(관련조문 : 시행령 제142조의2)
- ⑭ 법제196조의2 :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차량” → “건설기계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건설기계중 차량과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”으로((관련조문 : 시행령 제146조)
- ⑮ 법제196조의5제3항 : “대통령령이 정하는 도시의 시장·군수·구청장” → “특별시와 광역시(군지역을 제외한다)의 시장”으로(관련조문 : 시행령 제146조의5)